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. 6. 11 선고 2023가단1392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5. 21.

판 결 선 고 2024. 6. 11.

주 문

1. 전북 정읍시 D 전 465㎡ 중 1/4 지분에 관하여

가.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2019. 12. 3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소외 E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기재와 같다(위와 같이 선택한다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)

판사 김국식